

FTA ANALYSIS

중미 5개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한-이스라엘 FTA 미리보기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FTA ANALYSIS

중미 5개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¹⁾

이주연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G2(미국·중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 변동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최근 떠오르는 신남방·신북방 및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으로 우리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로 우리나라의 16번째 FTA이자 미주 FTA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한-중미 FTA가 발효되었다.²⁾

한-중미 FTA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수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신규 협정인 한-중미 FTA의 활용 방법과 중미 5개국(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의 최신 통관·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1) 본 보고서에 기고한 내용은 『신규 협정 FTA 활용절차(제도) 및 통관편람 e-book제작, 중미편(국제원산지정보원, 2020)』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2) 부분 발효(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 엘살바도르 발효

1. 한-중미 FTA 개관

1) 한-중미 FTA 체결 현황

지난 '19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이 부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미 국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이다.

이 중 니카라과·온두라스('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와는 발효를 마쳤으며 '20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파나마와의 발효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한-중미 FTA 체결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9.10.01	한-중미 FTA 부분 발효*****
2018.02.21	한-중미 FTA 정식서명
2017.03.10	한-중미 FTA 가서명****
2016.11.16	한-중미 FTA 실질 타결 선언(마나과)
2016.10.24~31	한-중미 FTA 제7차 협상 개최(서울)
2016.09.26~30	한-중미 FTA 제6차 협상 개최(마나과)
2016.08.08~12	한-중미 FTA 제5차 협상 개최(서울)
2016.05.23~27	한-중미 FTA 제4차 협상 개최(테구시갈파)
2016.03.29.~04.01	한-중미 FTA 6개국, 회기간 회의 개최(서울)
2016.02.22~26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샌프란시스코)
2015.11.23~27	한-중미 FTA 제2차 협상(엘살바도르)
2015.09.21~25	한-중미 FTA 제1차 협상(서울)
2015.07.28~30	한-중미 FTA 예비협약(산살바도르)
2015.06.18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04	한-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2012.10	한-중미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 개최(코스타리카)
2011.04	공동연구 종료**
2010.10	공동연구개시*

* 공동연구참여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 공동연구참여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과테말라는 협정발효 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예정

***** ('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 엘살바도르 발효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아시아 국가에서 체결한 최초의 중미 FTA이며,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형성의 의미를 가진다.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³⁾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 후 10년 간 실질 GDP 0.02%, 소비자 후생 6.9억 달러, 일자리는 2,534개를 증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누적기준).

[표 2] 한-중미 FTA 체결 기대효과

구분(단위)	발효 5년 후	발효 10년 후
실질 GDP(%)	0.01	0.02
소비자 후생(억불)	3.7	6.9
고용효과(천개)	877	2,534

자료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17.7)

2) 한-중미 FTA 주요 내용

한-중미 FTA 협정문은 크게 (1) 서문 및 일반 규정, (2) 상품, (3) 서비스·투자, (4) 정부조달, (5) 비즈니스 환경 개선, (6) 원산지 규정 및 절차 부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1) 서문 및 일반 규정에서 ‘서문’은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공통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 규정’은 협정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표 3]은 ‘일반 규정’에 명시된 한-중미 FTA 협정문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표 3] 한-중미 FTA 주요 용어의 정의

용어	한국	중미 5개국
국민 (national)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헌법에 정의된 코스타리카인(엘살바도르인, 온두라스인, 니카라과인, 파나마인)
지방정부 (local level of government)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지방자치당국(municipalities)
영역 (territory)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p>〈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p> 1)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파나마)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파나마)가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관세 (customs duties)	-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 -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94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 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②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 제한 관세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④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 되는 관세	<p>〈코스타리카, 니카라과〉</p> 1) 국제법과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국내법에 따른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영역

자료 :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2) 상품 부문에서는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에서 양측은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이외에도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쌀·고추·마늘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돼지고기·냉동새우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4]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 수준(%)

기준	우리측	중미측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품목수	95.5%~95.9%	95.20%	95.10%	95.60%	95.90%	95.30%
수입액	98.7%~100%	98.00%	98.10%	93.20%	99.10%	99.30%

자료 :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3) 서비스·투자 부문의 경우 ‘서비스’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이로 추후 엔터테인먼트·유통·건설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중미 진출이 기대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4) 정부조달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 그간 브라질, 스페인 기업들이 주도하던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에 우리 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5)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였다.

(6) 원산지 규정 및 절차에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인 ‘원산지 상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에서 ‘원산지 상품’이란 다음 [표 5]의 정의와 같다.

[표 5] 한-중미 FTA에서의 '원산지 상품'

연번	내용
1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3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1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FTA 원산지 규정은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과 개별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한-중미 FTA는 원산지 규정 중 일반기준은 협정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은 부속서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⁴⁾은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최종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한-중미 FTA에서 규정한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다음 [표 6]과 같다.



4) 한-중미 FTA 협정문 부속서 3-가



[표 6] 한-중미 FTA에서의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품목	PSR
화학제품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되,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화학공정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에 합의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일부 철강제품은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자동차	완성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충족 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자동차 부품·새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차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5%를 선택기준으로 도입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고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가습기, 제습기, 가정용 진공청소기 : CTSH 또는 RVC 30%(집적법) 또는 40%(공제법), △차량용 엔진(가솔린, 디젤) : CTH 또는 RVC35%(집적법) 또는 45%(공제법)
섬유·의류	대부분 원사기준으로 설정하되, 중미 4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을 허용 △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 원사·직물(50류~60류)은 완화된 원사기준, 완성의류(61류~63류)는 재단·봉제 기준(CC), 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비스코스 레이온섬유(5504)·사(5403, 5405)는 원사기준 예외로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 △엘살바도르 : 완성의류를 포함하여 섬유·의류(50류~63류) 품목 대부분 원사기준 적용
농축수산물	대체로 신선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신선농수산물(01류~14류) :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O) 중심(예: 육류, 어패류, 낙농품, 채소, 과일, 곡물, 채유용 종자 등), △가공식품(15류~24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중심(예: 식용유, 소시지, 참치통조림, 식초, 잼, 음료, 발효주, 담배 등)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부속서 3-가;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한-중미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는 원산지 증명서류 및 직접운송서류 등을 최소 5년간 보유하여 세관의 제출 요청 시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⁵⁾

기본적으로 특혜관세의 신청은 수입 시 이루어져야 하나, 한-중미 FTA는 특혜관세의 사후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통관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에도 한-중미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⁶⁾

한-중미 FTA에서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서면검증, 수출국에 의한 대행검증, 수입국 방문검증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는 가장 최근에 발효되어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한-중미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다음 [표 7]을 참고하여 원산지 검증 대응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표 7] 한-중미 FTA 원산지 검증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서면검증 시	자료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함 -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 - 경고 후 30일 경과 시 특혜관세 배제 가능
수입국 방문검증 시	수입국 방문검증 시 수입국은 검증시행 30일 전 이를 수출자·생산자·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하고 수출자·생산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수출자·생산자가 30일 이내 허가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가능

자료 :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4조;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7.9)

5)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0조

6) 한-중미 FTA 협정문 제3.21조

▶ [참고] 중미국 RTA 체결현황

- 현재 중미 국가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RTA)은 다음과 같이 총 42개로 확인됨⁷⁾

[표 8] 중미 RTA 체결 현황

[2020년 11월 기준]

	협정명	유형	범위	발효일자
1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U	Goods	04-Jun-61
2	파나마 - 도미니카 공화국	PSA	Goods	08-Jun-87
3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PSA	Goods	19-Apr-89
4	중미 - 도미니카 공화국 (참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FTA & EIA	Goods & Services	04-Oct-01
5	칠레 - 코스타리카	FTA & EIA	Goods & Services	15-Feb-02
6	칠레 - 엘살바도르	FTA & EIA	Goods & Services	01-Jun-02
7	코스타리카 - 캐나다	FTA	Goods	01-Nov-02
8	파나마 - 엘살바도르	FTA & EIA	Goods & Services	11-Apr-03
9	파나마 - 대만	FTA & EIA	Goods & Services	01-Jan-04
10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CAFTA-DR) (참여국: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미국)	FTA & EIA	Goods & Services	01-Mar-06
11	과테말라 - 대만	FTA & EIA	Goods & Services	01-Jul-06
12	파나마 - 싱가포르	FTA & EIA	Goods & Services	24-Jul-06
13	니카라과 - 대만	FTA & EIA	Goods & Services	01-Jan-08
14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대만	FTA & EIA	Goods & Services	01-Mar-08

7) WTO RTA DB 기준, 검색일자 2020. 11월

	협정명	유형	범위	발효일자
15	파나마 - 칠레	FTA & EIA	Goods & Services	07-Mar-08
16	칠레 - 온두라스	FTA & EIA	Goods & Services	19-Jul-08
17	파나마 - 코스타리카	FTA & EIA	Goods & Services	23-Nov-08
18	EU - CARIFORUM (참여국: 안티쿠아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라질,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FTA & EIA	Goods & Services	29-Dec-08
19	파나마 - 온두라스	FTA & EIA	Goods & Services	09-Jan-09
20	파나마 - 과테말라	FTA & EIA	Goods & Services	20-Jun-09
21	콜롬비아 - Northern Triangle (참여국: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FTA & EIA	Goods & Services	12-Nov-09
22	파나마 - 니카라과	FTA & EIA	Goods & Services	21-Nov-09
23	과테말라 - 칠레	FTA & EIA	Goods & Services	23-Mar-10
24	코스타리카 - 중국	FTA & EIA	Goods & Services	01-Aug-11
25	파나마 - 페루	FTA & EIA	Goods & Services	01-May-12
26	엘살바도르 - 쿠바	PSA	Goods	01-Aug-12
27	중미 - 멕시코 (참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FTA & EIA	Goods & Services	01-Sep-12
28	니카라과 - 칠레	FTA & EIA	Goods & Services	19-Oct-12

	협정명	유형	범위	발효일자
29	파나마 - 미국	FTA & EIA	Goods & Services	31-Oct-12
30	파나마 - 캐나다	FTA & EIA	Goods & Services	01-Apr-13
31	중미공동시장(CACM) + 파나마 가입	CU	Goods	06-May-13
32	코스타리카 - 페루	FTA & EIA	Goods & Services	01-Jun-13
33	코스타리카 - 싱가포르	FTA & EIA	Goods & Services	01-Jul-13
34	EU - 중미 (참여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블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FTA & EIA	Goods & Services	01-Aug-13
35	EFTA - 중미 (참여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FTA & EIA	Goods & Services	19-Aug-14
36	온두라스 - 캐나다	FTA & EIA	Goods & Services	01-Oct-14
37	파나마 - 멕시코	FTA & EIA	Goods & Services	01-Jul-15
38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FTA & EIA	Goods & Services	01-Aug-16
39	온두라스 - 페루	FTA & EIA	Goods & Services	01-Jan-17
40	엘살바도르 - 에콰도르	PSA	Goods	16-Nov-17
41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U & EIA	Goods & Services	01-Aug-1973(G) / 04-Jul-2002(S)
42	중미 - 대한민국 (참여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대한민국)	FTA	Goods & Services	부분 발효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자료 : WTO RTA D/B(검색일: '20. 11월 기준)

2. 한-중미 FTA 활용방법

1) 한-중미 FTA 활용 순서 및 단계별 유의사항

[표 9] 한·중미 FTA 활용 단계별 유의사항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는데,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국가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회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 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각 협정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한-중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검증을 요청받은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미(SIECA) 무역현황⁸⁾

1) 중미(SIECA) 주요 교역국

[표 10] 중미(SIECA) 주요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불]

국 가	수 출			국 가	수 입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 체	30,644	31,066	31,878	전 체	70,285	73,996	72,743
1 미국	10,017	10,286	10,814	1 미국	24,018	25,658	24,539
2 온두라스	2,127	2,321	2,262	2 중국	8,218	8,922	8,969
3 엘살바도르	1,988	2,133	2,216	3 멕시코	5,544	5,907	5,826
4 과테말라	1,649	1,753	1,897	4 파나마	2,765	3,119	2,994
5 니카라과	1,693	1,562	1,522	5 과테말라	3,045	2,907	2,955

주 : 순위는 2019년 기준(기타 제외)

자료 :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최근 3년간 중미경제통합사무국(이하 “SIECA”) 수출입 내역을 통해 중미(SIECA) 주요 수출입국을 확인한 결과, 수출 상위국은 미국·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니카라과, 수입 상위국은 미국·중국·멕시코·파나마·과테말라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 중미(SIECA)는 미국과 교류가 가장 많으며 그 규모도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입 상위국에 중미(SIECA) 역내국가도 다수 차지하고 있어 역내 간 교역이 활발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기준 중미(SIECA) 수출국 순위에서 20위권 이하를 차지하여 기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 순위에서는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중미(SIECA)의 對한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7년 1,299백만불 → ‘18년 981백만불 → ‘19년 916백만불).

8) 동 자료는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무역통계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 「SIECA 무역통계 시스템」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의 대외 무역에 대한 지역 정보 플랫폼으로 중미 국가의 역내 및 역외 수출입 데이터 및 중미 관세 시스템(SAC)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동 자료에서 칭하는 SIECA 무역통계 수치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6개국의 수치에 해당함.

2) 중미(SIECA) 주요 수출입 품목

[표 11] 중미(SIECA)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

HS 4	품 명	수 출		HS 4	품 명	수 입	
		2018	2019			2018	2019
	전 체	31,066	31,878		전 체	73,996	72,743
9018	의료용 기기	2,458	2,774	2710	석유조제품	9,717	9,482
0803	바나나	2,591	2,578	3004	소매의약품	2,739	2,818
0901	커피	2,670	2,492	8703	승용 자동차	2,456	2,306
1701	사탕수수당	1,148	1,228	8517	통신기기	1,887	1,980
0804	대추야자	1,109	1,058	2106	기타 조제식품	937	1,012

주 : 순위는 2019년 기준(기타 제외)

자료 : SIECA 무역통계 시스템



이번에는 최근 2년간 수출입 내역을 통해 중미(SIECA) 주요 수출입 품목(HS 4단위 기준)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중미(SIECA) 5대 수출 품목은 의료용기기(HS 9018), 바나나(HS 0803), 커피(HS 0901), 사탕수수당(HS 1701), 대추야자(HS 0804)였으며, 5대 수입 품목은 석유조제품(HS 2710), 소매의약품(HS 3004), 승용 자동차(HS 8703), 통신기기(HS 8517), 기타 조제식료품(HS 2106) 등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지역은 온화한 기후 덕에 오래 전부터 농업이 잘 발달하여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 1위를 제외한 모든 수출 5대 품목이 모두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한 의료용 기기의 경우 대부분 중미 지역 마킬라도라(maquiladora)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수출 실적으로 사료된다. 마킬라도라(maquiladora)에는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마킬라도라(maquiladora)는 지정된 물품을 미국 등에 수출할 경우 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부품 및 기계 등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적용하여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가공제도를 뜻한다.

흔히는 멕시코의 제도를 가리키나,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다.⁹⁾



9) 임정훈(2014), 마킬라도라 산업에서 멕시코 납품업체의 역량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 Revista Iberoamericana, 25(3), 137-175;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D%82%AC%EB%9D%BC%EB%8F%84%EB%9D%BC>

4. 한-중미 교역현황¹⁰⁾

1) 한국의 對중미 수출입 동향

[표 12] 한국의 對중미(5개국)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수 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전 체		2,031	2,202	2,525	2,176	1,409
1	파나마	1,441	1,642	2,008	1,713	1,120
2	엘살바도르	128	160	166	149	73
3	온두라스	117	126	118	125	81
4	코스타리카	217	168	135	119	82
5	니카라과	128	106	98	70	53

		수 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전 체		544	353	453	434	530
1	코스타리카	133	139	207	225	127
2	파나마	339	141	153	87	214
3	온두라스	47	42	52	63	66
4	엘살바도르	13	20	24	39	55
5	니카라과	12	11	17	20	68

주 : 순위는 2019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10) 이에서 '중미'는 한-중미 FTA 체결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개국을 뜻함

‘19년 수출입 금액 기준, 중미 5개국 중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파나마, 최대 수입국은 코스타리카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한 對파나마 수출액(약 17억불)은 중미 5개국 전체 수출금액(약 21.7억불)의

79%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며, 수입에서 1위를 차지한 對코스타리카 수입액(약 4.3억불)은 중미 5개국 전체 수입금액(약 4.3억불)의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입 모두에서 1위국의 비중이 2위 및 나머지 순위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對중미 5개국별 주요 수출입 품목

[표 13] 한국의 파나마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

HS 6	품 명	수출	HS 6	품 명	수입
		2019			2019
전 체		1,713	전 체		87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1,041	890120	탱커	26
890120	탱커	414	260300	동광과 그 정광	14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44	890130	냉동선	12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20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0
401110	승용 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 (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 을 포함한다]	18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7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19년 수출입 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對파나마 최대 수출 품목은 제8901.90호, 최대 수입 품목은 제8901.20호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제8901.90호(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은 우리나라의 對파나마 수출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주요 수출품 중 제7210.49호(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판), 제7606.12호(알루미늄 합금의 판·시트·대, 정·직사각형의 것) 등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

HS 6	품 명	수출	HS 6	품 명	수입
		2019			2019
전 체		119	전 체		225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28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111
300220	백신(인체 의약품)	6	901839	기타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 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31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5	090111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14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5	902190	기타	9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5	901890	그 밖의 의료용 기기	7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우리나라의 對코스타리카 최대 수출 품목은 제8703.23호, 최대 수입 품목은 제8901.90호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품인 제8703.23호(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으로 한-중미 FTA 체결 시 관세혜택 등으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출품 중 2위를 차지한 제3002.20호(인체 의약품 백신)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이 약 47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한국의 對온두라스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

HS 6	품 명	수출	HS 6	품 명	수입
		2019			2019
전 체		125	전 체		39
854430	접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 (자동차·항공기·선박용의 것)	36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 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화물자동차	11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6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7	090111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4
320416	반응성염료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6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3
340211	음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	5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3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우리나라의 對온두라스 최대 수출 품목은 제8544.30호, 최대 수입 품목은 제1701.14호로 확인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5509.21호(합성스테이플섬유사, 단사)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이 매우 큰 폭(263%)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16]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

HS 6	품 명	수출	HS 6	품 명	수입
		2019			2019
전 체		149	전 체		63
72106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알루미늄-아연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45	090111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23
721049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판(폭 60cm이상, 아연을 도포한 것)	16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화물자동차	16	610910	면으로 만든 티셔츠	7
721070	철이나 비합금강의 판(폭 60cm 이상,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13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
721633	철이나 비합금강의 에이치(H)형강	6	61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저지·폴오버·카디건	2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우리나라의 對엘살바도르 최대 수출 품목은 제7210.61호, 최대 수입 품목은 제0901.11호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년대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제7216.33호(철이나 비합금강이 H형강), 제8702.10호(압축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등으로 확인된다. 전년대비 수출액은 각각 122%, 117% 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17] 한국의 對니카라과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불]

HS 6	품 명	수출	HS 6	품 명	수입
		2019			2019
전 체		70	전 체		20
600622	염색한 면제 기타 편물	9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것)	7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5
840999	기타 부분품(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용)	4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3
580710	직조한 섬유재의 레이블·배지	4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1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용 보드·패널	3	090111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1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니카라과 최대 수출 품목은 제6006.22호, 최대 수입 품목은 제7404.00호로 나타났다.

그간 니카라과와 우리나라의 교역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한-중미 FTA 체결로 향후 양국의 교역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중 수출 상위 5위 품목인 제8537.10호(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용 보드·패널)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앞으로의 수출도 기대되는 품목이다.

5. 중미 통관·통상환경

1) 중미 5개국 통관 조직

중미 5개국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주요 조직은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는 관세청, 엘살바도르는 재무부, 니카라과는 산업자원부 및 관세청이다. 다음 [표 18]에는 중미 5개국별 통관 조직 정보를 간략히 정리해두었다.



[표 18] 중미 5개국 통관 조직

국가	통관 조직	주요 정보
파나마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주소 : Avenida Ascanio Villalaz, Panamá, · 전화번호 : +507 506-6400 · 이메일 : soporte.siga@ana.gob.pa · 홈페이지 : https://www.ana.gob.pa/ · 주요업무 : 국경 간 상품, 인력 및 운송수단의 출입과 이동의 통제, 수출입 모니터링 및 · 검사, 관세 위반 방지· 조사· 제재 등
코스타리카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산하의 관세청(Customs General Directorate) · 주소 : República de Costa Rica San José, Avenida 2da Calle 1 y 3, diagonal al Teatro Nacional · 전화번호 : +506 2359-4647 · 이메일 : ocomunicacionmh@hacienda.go.cr · 홈페이지 : http://www.hacienda.go.cr/
온두라스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두라스 관세청(Dirección Adjunta De Rentas Aduaneras) · 주소 : San Pedro Sula, Barrio Río Piedras 19 Avenida Sur Oeste, 8 calle, Corporativo 1908 · 전화번호 : +504 2240-0800 · 이메일 : info@aduanas.gob.hn · 홈페이지 : http://www.aduanas.gob.hn/

국가	통관 조직	주요 정보
엘살바도르	재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살바도르 재무부(Gobierno de El Salvador, Ministerio de Hacienda) · 주소 : Anguiatú, El Amatillo, El Poy, La Hachadura, Las Chinamas, San Cristóbal(국경세관), Fardos Postales, San Salvador (San Bartolo), Santa Ana, Bodega El Papalón, CIEX(지역세관) · 전화번호 : +503 2244-3000 / 2237-3000 · 이메일 : clientedgt@mh.gob.sv · 홈페이지 : http://www7.mh.gob.sv/pmh/es/Temas/Aduanas_de_El_Salvador/
니카라과	산업자원부,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카라과 산업자원부(MIFIC) 및 관세청(DGA) · 주소 : Km. 6 Carretera a Masaya · 전화번호 : +505 2248-9300 · 홈페이지 : https://www.mific.gob.ni/

자료 : 각국 통관조직 홈페이지



2) 중미 5개국 수입통관 절차

한-중미 FTA의 경우 물품이 최종 도착하는 도착국의 통관절차 및 법규를 적용받게 된다.

수입 통관 절차는 중미 5개국별로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미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표 19]~[표 23]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국가의 수입통관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표 19] 파나마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순서	상세 내용
① 물품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이 파나마에 도착하면, 세관 창고에 반입되어야 하며,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의 하역지 관할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해당 장치장에서 반출할 수 있음
②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통관사에 의뢰하여 세관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에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on de Liquidacion)을 기입하여 세관총국에 제출함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Entry form)와 함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수입물품의 하역지 관할 세관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파나마 국영은행 등에서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관할세관에 제출한뒤, 수입물품을 반출함 · 수입통관 시 수입국 세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③ 수입 인증·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세에 관한 법령 이외에 기타법령, 규정에 의해 인증,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해당물품이 적절한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세관에 입증하여야 함 · 구체적인 타 법령 절차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따라 상이함 · 파나마 관세청 사이트에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④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통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보세구역 등에서 실시하며, 플랜트 설비 등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을 현장에 파견해 검사함 · 물품의 검사 결과 수량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담당한 세관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화물수취인의 확인을 받음
⑤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 관세의 부과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종가세이며, 물품에 따라 종량세 또는 혼합세가 부과됨.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가격 및 수량에 따라 부과됨 ·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에, 소비세(ITBMS), 특별소비세(ISC)가 부과될 수 있음 · 소비세(ITBMS) : 일반 7%, 바이오 연료 생산용 에틸알코올과 무수 알코올 (HS 2207.10.11.) 및 기타 에틸알코올 (HS 2207.10.91) : 10% · 특별 소비세(ISC) : 주류, 귀금속, 가전제품, 컴퓨터, 자동차, 요트 등 일부품목에 5~100% 부과
⑥ 수입 허가 및 통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 물품 반입부터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5일 정도임

자료 : Tradenavi

참고로 코스타리카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입자는 TIC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입통관 진행 시 TICA 등록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표 20] 코스타리카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순서	상세 내용
① 물품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통관을 진행함 ·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②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은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수입, 수출용제품, In-bound 보관제품, 구급품(비상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품샘플, 긴급패키지, 우편, 면세점 구입 상품, 비상업적 물품, 가족/친지를 위한 소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의 통관 시 통관사를 고용할 의무는 없음 · 수입통관 시 수입국 세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③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검사는 검사자(Vista) 입회하에 실시하며 수입품의 상태, 가격, 중량, 명칭 등이 서류상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④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⑤ 수입 허가 및 통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자료 : Tradenavi

[표 21] 온두라스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순서	상세 내용
① 물품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항구 혹은 국경 입도시 화주에 의해 항구/국경 통관 혹은 공항세관(중앙세관) 통관 여부 세관 통보, 일반적으로 중앙세관 통관 실시 · 500달러(CIF 가격)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
②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 수입통관 시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됨
④ 관세 등 납부 및 통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 온두라스 국세청 웹사이트 (www.sar.gob.hn)에 접속 후 관세(ADUANAS) 카테고리 중 SARAH WEB에서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Declaracion Manifiesto de Carga)를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

자료 : Tradenavi

[표 22] 엘살바도르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순서	상세 내용
①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함 · 수입 신고 시 수입 물품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②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화물 검사가 진행됨 ·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화물 검사는 생략될 수도 있음
③ 관세 등 납부 및 통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 엘살바도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제세별 세율은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정도임

자료 : Tradenavi

[표 23] 니카라과르 수입통관 절차 및 상세내용

순서	상세 내용
① 납세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해야 함
② 물품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선박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도착 통보(보통 화물도착 후 3-7일 소요)
③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는 통관신고서(Declaracion Desalmacenaje)를 작성하여 관세청(DGA: Direccion General de Aduanas)에 제출함 · 서류가 정확하고 화물이 이미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있을시 검사자가 선정됨 · 수입 신고 시 수입 물품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④ 서류 및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자(Vista)는 수입품의 성질, 가격, 중량, HS Code, 부과될 관세율을 산정한 후 동 서류를 2차 검사자(Verificator: 1차 검사자가 확인한 내용에 송부함 · 2차 검사자에 의한 최종서류 확인 후 관세액이 확정되나 자동차 등의 사치품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부(Valoracion Department)로 보내져 최종 관세가 확정됨 · 2차 검사자의 검사 후 관세액 확정시까지의 소요시간은 화물의 내용이나 담당 검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2-8시간이 소요되며 때에 따라 1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⑤ 관세 등 납부 및 통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는 최종 관세액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관세액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자료 : Tradenavi

3) 중미 5개국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

통관 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역시 중미 5개국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한-중미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국의 필수 구비서류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다음 [표 24]~[표 28]은 중미 5개국별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는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통관을 진행하

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각국 관세행정조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문 내용 및 최신 규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미 5개국별로 필수 구비서류는 조금씩 상이하나, 모든 국가에서 수출입자는 해당국에서 규정된 필수 서류를 세관당국 요청 시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4] 파나마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 종류

연번	서류 및 내용
1	수입신고서
2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 통관사가 작성하여 관세총국에 제출
3	상업송장 - 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 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만 달러 이상은 75달러임 - 상업송장(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파나마 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쉬핑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4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
5	수입업자 납세증명서 -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납부증명서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

자료 : Tradenavi

[표 25] 코스타리카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 종류

연번	서류 및 내용
1	수입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 - 수입면장(Import Permits)은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 2,0)를 통해 받아야 함
2	상업송장 원본
3	선하증권(B/L)
4	수입 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에 한함)
5	원산지증명서
6	기타 코스타리카 법으로 지정된 요청 서류 (필요한 경우에 한함, (예)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

자료 : Tradenavi

[표 26] 온두라스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 종류

연번	서류 및 내용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본 1부
2	선하증권(B/L) 원본
3	수입 면장(POLIZA)
4	화물 신고서(MANIFIESTO DE CARGA)
5	납세자번호(RTN) 사본

자료 : Tradenavi

[표 27] 엘살바도르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 종류

연번	서류 및 내용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	선하증권(B/L)
3	원산지증명서(C/O)
4	수입 허가서 (수입허가품목인 경우에 한함)
5	기타 제 증명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자료 : Tradenavi

[표 28] 니카라과 수입통관 시 필수 구비서류 종류

연번	서류 및 내용
1	운송서류 (B/L 또는 Airway Bill)
2	송장(Invoice) - 스페인어로 작성
3	통관신고서(Declaracion Aduanera)
4	수입허가서(Autorizacion de Desalimaenaje) (필요한 경우에 한함, (예) 농축산물, 의약품 등)

자료 : Tradenavi

4) 중미 5개국 관세 종류 및 부과 방법

중미공동시장(영문:CACM/서문:MCCA)을 형성하고 있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은 '93년 2월 27일부로 중미경제

통합사무국(SIECA)의 중미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따라서 중미 5개국의 관세는 공통적으로 다음 [표 29]와 같이 구분된다.

[표 29] 중미 5개국 관세의 종류

세율종류	상세 내용
기본관세율 (General Duty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없이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율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각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 등 특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파나마의 기본 관세율은 1999년 WTO가입에 따라 대폭 인하되었으며, 현재는 쌀, 우유제품, 자동차 3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0%~10%의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중미공동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에서 채택한 기본관세체제로 중미 5개국 중 이에 해당하는 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의 경우 중미공동관세를 자국의기본관세 체제이자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로 통합함 ▷ 단, 각 회원국별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적용을 유보하고 각 회원국의 관세 재량권에 따라 관세를 달리 부과하고 있음
FTA 협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N 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간에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적용 할 수 있음 · 단, 해당 FTA에서 규정된 물품의 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양당사국 수출입 통관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 : Tradenavi

다만,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국의 품목분류코드 (HS코드)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가세·종량세·혼합세 등 각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 그러나 중미 5개국 간 HS코드 및 산출방식은 통일되

어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같은 중미 국가라 하더라도 관세 산출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자세한 중미 5개국의 관세 부과 기준 및 산출 방법은 다음 [표 30] 내용과 같다.

[표 30] 중미 5개국 관세 부과 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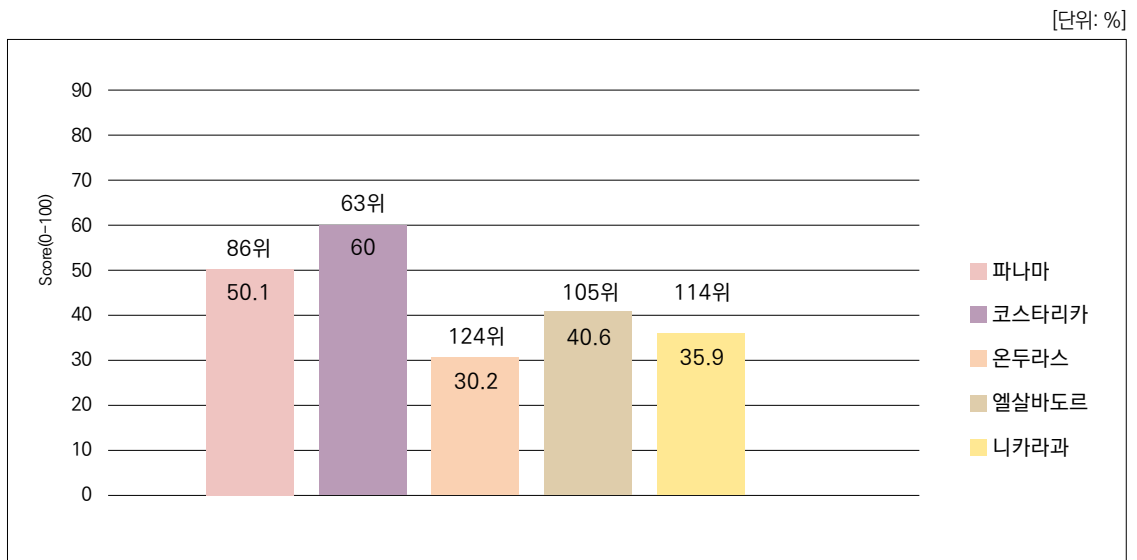
세율종류	상세 내용			
부과 기준	파나마 : HS CODE 10단위 기준			
	HS CODE	Description	General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0101.21-0000	Pure-bred breeding animals	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HS CODE 12단위 기준			
	HS CODE	Description	General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0101.2	- Horses:			
0101.21-000000	-- Pure-bred breeding animals	0%		
산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마 : 원칙적으로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물품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함 ·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종가세 방식 			
우선적용 순위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공통			
	순위	세율종류	구분	요건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특혜 세율 →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	부과 대상 품목에 해당 부과 대상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 별로 부과
	2순위	FTA협정세율 할당관세 감면세율	특혜 세율 →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 또는 0%의 세율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3순위	기본세율	-	-

5)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

'19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미 5개국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보급 점수는 평균 43.4점이며, 최고 득점 국가는 코스타리카, 최하 득점 국가는 온두라스로 나타났다.



[그림 1] 중미 5개국 ICT 보급 현황(2019)



자료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WEF

'ICT 보급(ICT Adoption)' 지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매년 전 세계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로, 특정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 정도를 5가지 지표로 측정하여 1부터 100까지의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중미 5개국 중 ICT 보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코스타리카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 수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온두라스의 경우, 이동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자 수,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등 거의 대부분의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최상위 점수를 기록한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도 ICT 보급 수준이 세계 63위에 그쳐 전체적으로 중미 5개국의 ICT 보급 수준이 아직 발달 초기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미 5개국은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ICT 발전 수준 대비 높은 무선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WEF의 ICT 보급 분야에서 92.8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19년 WEF ITC 보급 분야 조사대상국(141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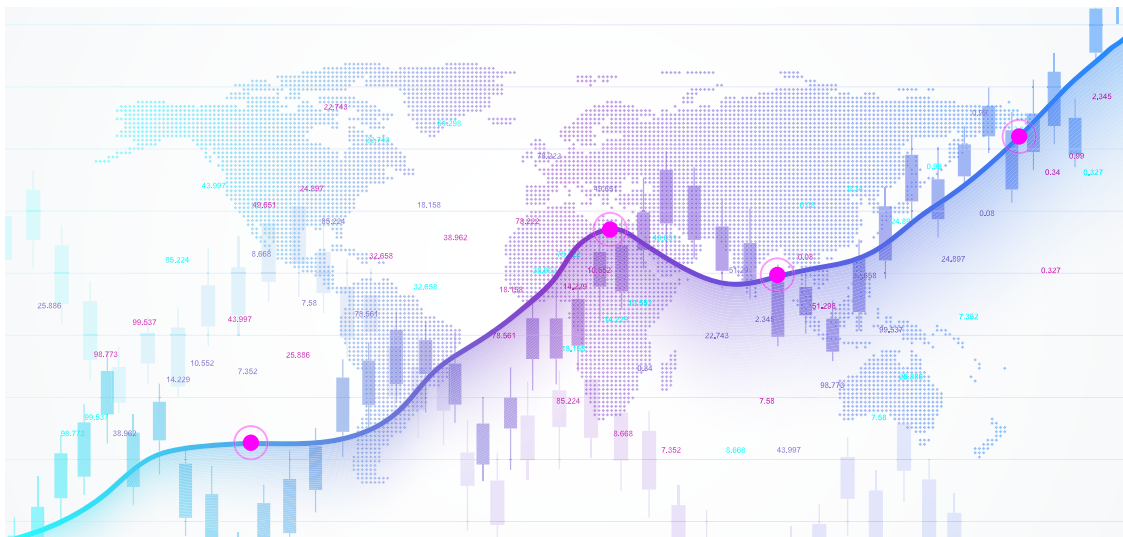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및 국내 전자상거래 진출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아직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규 시장 확대 및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표 31]에서는 현재 중미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미지역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아직 발달 초기 단계에 있어 대부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Amazon, eBay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음 [표 31]은 중미 현지 플랫폼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은 진출 전략 수립 시 해당 플랫폼들을 참고하면 중미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1] 중미 주요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

구 분	상 세 내 용
 <p>Encuentra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2005년 · 본사 : 스위스 · 서비스 지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스위스, 니카라과 등 · 주요 분야 : 온라인 쇼핑, 마켓 플레이스, 전자상거래, 광고, 마케팅 및 디지털 미디어, 부동산 등 · 특징 : 부동산, 자동차, 중고거래 등 다양한 물품의 온라인 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중미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 최근(20.7월) 또 다른 중미지역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이었던 OLX가 중미지역 4개국(과테말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에서 Encuentra24와 합병을 발표함 · URL : http://www.encuentra24.com
 <p>MercadoLib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1999년 · 본사 : 아르헨티나 · 서비스 지역 :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중남미 지역 18개 이상 국가에 지사 설립) · 주요 분야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온라인 경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전자상거래 등 · 특징 : 아르헨티나 기업인 MercadoLibre(메르카도 리브레)는 중남미 지역 전자상거래 분야를 석권하여 중남미 지역의 Amazon(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함. '18년 미국 인터넷마케팅업체 Comscore 조사 결과에 의하면 MercadoLibre는 중남미 지역 온라인 구매자 중 47.4%(5,62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꼽히는 Amazon이 중남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6.6%(1,972만명)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임 · URL : https://ideas.mercadolibre.com/
 <p>Glov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2015년 · 본사 : 스페인 · 서비스 지역 : 스페인,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전 세계 19개국 690개 이상의 도시) · 주요 분야 : 주문형 택배 서비스, 모바일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식료 및 잡화류, 다중 카테고리 라이프 스타일 앱 · 특징 : 스페인에서 설립된 Glovo는 지금까지 전세계 22개국 및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1억건 이상의 주문을 달성했으며, 현재 유럽에서 설립된 최대 주문형 플랫폼으로 중미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음 · URL : https://glovoapp.com/
 <p>Appetito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2015년 · 본사 : 파나마 · 서비스 지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등 · 주요 분야 : 전자상거래, 온라인 배송, 푸드 딜리버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 특징 : 파나마의 전국 13개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플랫폼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지역 비즈니스 및 레스토랑 프로모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URL : https://www.appetito24.com.pa/

자료 : 연구자 작성

FTA ANALYSIS

한-이스라엘 FTA 미리보기¹⁾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수입액 중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내구성 가전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도 현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이스라엘 내에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확대로 2019년부터 현지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매장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1) 본 보고서에 기고한 내용은 『신규 협정 FTA 활용절차(제도) 및 통관편람 e-book제작, 이스라엘편(국제원산지정보원, 2020)』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1. 이스라엘 시장환경 및 특징

1) 이스라엘 시장환경 개괄

이스라엘은 중동·서아시아에 유대인이 세운 국가로 비교적 작은 국가나 지리적으로 다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종 구성은 유대인 75.4%, 아랍인 20.6%, 기타인종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는 국가이나 내수 시장 성장, 가스전 개발, 하이테크 산업의 호황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해갈 전망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교역은 미국과 EU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아세안 최초의 FTA국이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다변화와 시장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스라엘 시장환경 특성

이스라엘의 시장은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국민의 다양한 출신배경 등으로 소비 수준과 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이스라엘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높은 품질과 경쟁력 가격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나 부품, 정교하고 다양한 구색의 소비제품 등 분야에 한국산 수출이 유망하다.

이스라엘 교역은 현재 미국과 EU에 편중되어 있으며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맺게 되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의 FTA인만큼 한국의 이스라엘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수입액 중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내구성 가전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도 현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이스라엘 내에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확대로 2019년부터 현지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매장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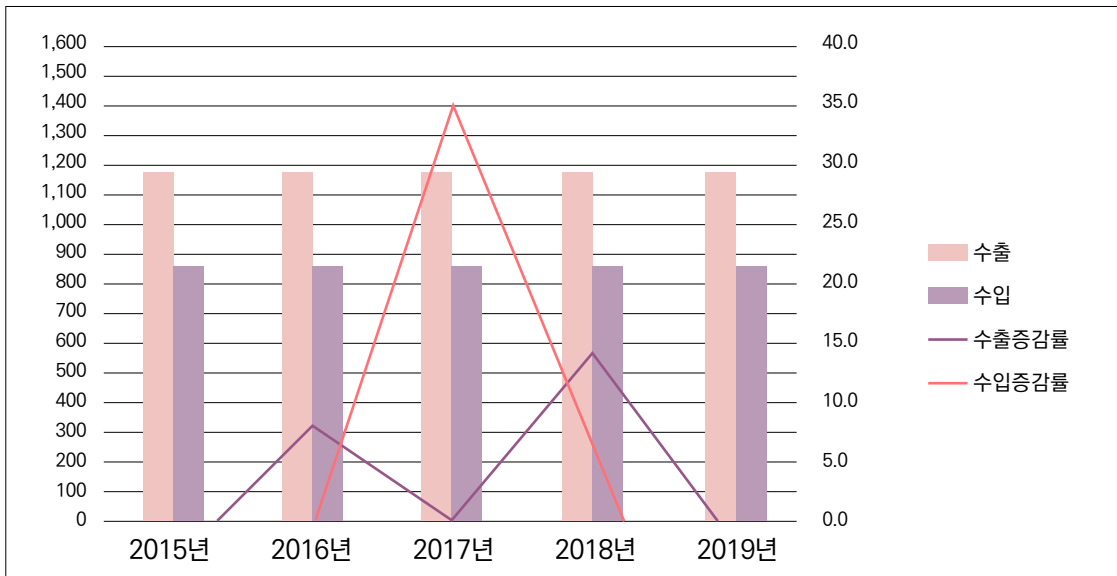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교역현황

1)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1,427	-1.5	901	-29.1	1,374	526
2018년	1,448	14.2	1,271	9.0	2,328	177
2017년	1,268	-0.5	1,167	34.9	2,719	101
2016년	1,275	8.1	865	-0.6	2,435	410
2015년	1,180	-3.7	870	-9.3	2,140	310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이스라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11억불 → '19년:14억불), 수입은 '18년 최고치인 13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이스라엘의 교역은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5%, 수입은 전년 대비 -29.1% 감소하여 각각 약 14억불, 약 0.9억불이며 우리나라의 이스라엘과의 교역에 있어 특징은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이 수입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천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1,448,112	1,426,747	-1.5
1	자동차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436,289	417,758	-4.2
2	자동차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14,639	127,463	11.2
3	영상기기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68,139	65,524	-3.8
4	자동차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91,886	54,766	-40.4
5	자동차	870321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31,680	45,522	43.7
6	자동차부품	870899	기타	27,693	30,253	9.2
7	석유제품	271019	기타	20,106	29,774	48.1
8	자동차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32,298	28,879	-10.6
9	무선통신기기	851770	부분품	9,318	22,369	140.1
10	기타가정용 전자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23,757	22,064	-7.1
11	기호식품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17,921	21,185	18.2
12	냉장고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8,023	21,065	16.9
13	반도체 제조용 장비	903141	반도체웨이퍼와 소자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검사용	1,017	15,238	1,398.3
14	기구부품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이상으로 한정한다)	22,517	13,501	-40.0
15	합성수지	390730	에폭시수지	14,718	13,062	-11.3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840290	부분품	1	11,292	1,013,532.4
17	원동기 및 펌프	841340	콘크리트 펌프	10,554	10,846	2.8
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52990	기타	1,015	9,958	881.5
19	자동차	870324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5,816	9,955	-37.1
20	합성수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	9,826	8,818	-10.3

주: 2019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ITC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이스라엘 수출 상위 품목은 자동차, 영상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제품으로 나타났다.

자동차(HS 8703.23)의 경우 전년대비 -40.4%, 폴리에틸렌(비중이 0.94이상으로 한정한다)은 -40% 감소하였다.

이중, 부분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는 전년대비 1,013,532%('18년: 1천불 → '19년: 11,292천불),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1,398%('18년: 1,017천불 → '19년:15,238천불)로 폭증한바 있다.



3)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천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1,271,467	901,205	-29.1
1	반도체 제조용 장비	9031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검사용	239,227	114,044	-52.3
2	동제품	7404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0,209	50,195	-16.6
3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부분품	48,964	45,641	-6.8
4	전자응용기기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diffractionapparatus)	112,167	39,158	-65.1
5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597	31,135	5,112.5
6	계측제어 분석기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6,860	30,145	-47.0
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52990	기타	13,461	25,009	85.8
8	공구	820900	공구용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2,773	21,059	-7.5
9	전자응용기기	901890	그 밖의 기기	17,526	19,184	9.5
10	계측제어 분석기	903180	그 밖의 기기	76,378	15,599	-79.6
11	칼륨비료	310420	염화칼륨	14,818	15,437	4.2
12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 ·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1,968	15,199	-52.5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3	무선통신기기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기기 [교환기와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940	14,156	-5.2
14	정밀화학원료	293369	기타	6,359	12,153	91.1
15	인조단 섬유직물	290819	기타	9,344	11,034	18.1
16	알루미늄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22,498	10,658	-52.6
17	무선통신기기	852910	각종안테나와반사식안테나, 그부분품	5,050	10,360	105.1
18	전자응용기기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8,896	9,316	4.7
19	산업용 전기기기	853710	전압이1,000볼트이하인것	11,184	9,127	-18.4
20	건설광산기계	852610	레이더기기	45,246	8,931	-80.3

주: 2019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ITC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이스라엘 수입 상위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동제품, 항공기 및 부품, 전자 응용기기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석유제품 중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은 전년대비 5,112%로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18년: 597천불 → '19년 31,135천불)

이외에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HS 8529.90/기타의 품목)가 전년대비 85.8% 증가하였고, 전자 응용기기(HS 9018.90/그 밖의 기기)가 전년대비 9.5% 증가한 바 있다.



3. 이스라엘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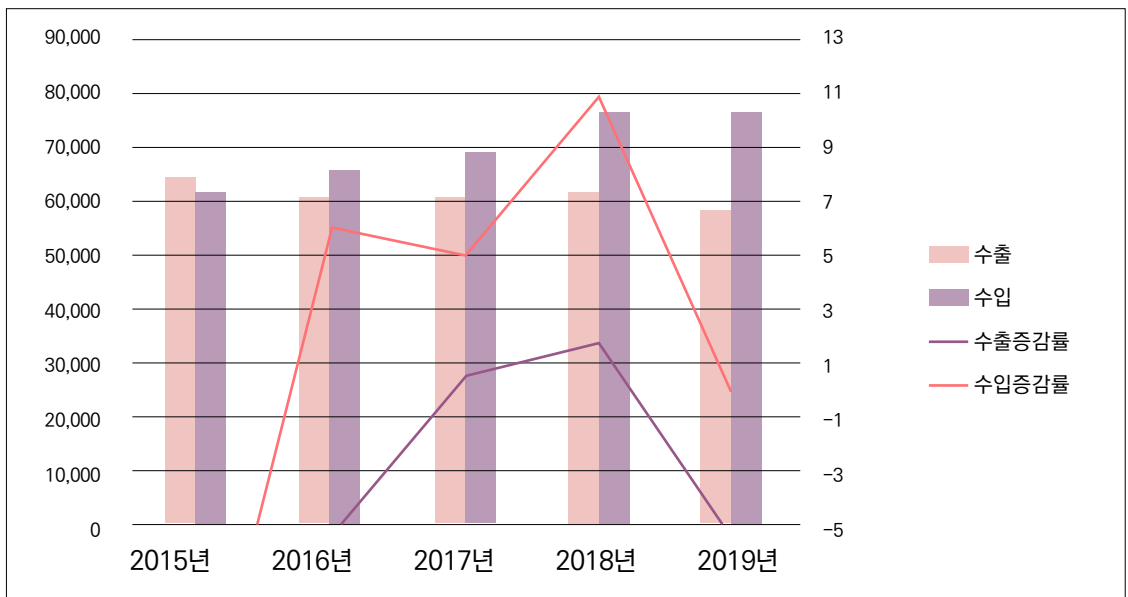
1) 이스라엘 연도별 수출입 동향

최근 5년간 이스라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15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7년, '18년의 경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58,448	-5.6	76,491	-0.1	134,939	-18,043
2018년	61,952	1.7	76,598	10.8	138,549	-14,646
2017년	60,900	0.5	69,109	5.0	130,009	-8,210
2016년	60,571	-5.4	65,803	6.0	126,373	-5,232
2015년	64,063	-7.1	62,065	-14.1	126,129	1,998



자료: ITC

2) 이스라엘 품목별 수출 동향

[표 6] 이스라엘 품목별 수출 동향(2018년-2019년)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61,952	58,448	-5.7
1	보석	710239	기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12,039	9,699	-19.4
2	정밀화학원료	293359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 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82	3,236	3836.9
3	농약 및 의약품	300490	기타	4,469	2,230	-50.1
4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839	1,873	1.8
5	보석	710231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갬 것)	2,418	1,603	-33.7
6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회로나 그 밖의회로를 갖춘 것 인지는 상관없다.]	2,763	1,600	-42.1
7	기타화학 공업제품	382490	기타	1,997	1,591	-20.3
8	산업용 전기기기	854370	그 밖의 기기	681	1,377	102.2
9	전자응용기기	901890	그 밖의 기기	954	1,005	5.4
10	유선통신기기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12	974	20.0
11	복합비료	310590	기타	949	851	-10.3
12	석유제품	271019	기타	469	760	62.0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3	농약및의약품	380893	제조제·발아억제제·식물 성장조절제	718	747	4.0
14	공구	820900	공구용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21	703	-23.7
15	기타 잡제품	999999	그 밖의 분류되지 않은 상품	823	692	-16.0
16	석유제품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850	615	-27.6
17	유선통신기기	851770	부분품	659	511	-22.5
18	전자응용기기	901819	기타	393	420	7.0
19	반도체제조용 장비	9031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검사용	217	412	89.8
20	기타 잡제품	844319	기타	392	411	4.9

주: 2019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ITC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품목은 보석(HS 7102.39/기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정밀화학원료(HS 2933.59/피리미딘), 농약 및 의약품(HS 3004.90/기타), 항공기 및 부품(HS 8803.30/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이 수출되고 있다.

'19년 기준 전년대비 이스라엘의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HS 2933.59/피리미딘)로 전년대비 3836.9%가 폭증하였으며, 산업용 전기기

(HS 8543.70/그 밖의 기기)이며 전년대비 102.2%가 증가하였다.

또한, '19년 기준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보석(HS 7102.39/기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으로 전년대비 -19.4%가 감소하였고 농약 및 의약품(HS 3004.90/기타의 품목)역시 -50.1% 감소한 바 있다.

3) 이스라엘 품목별 수입 동향

[표 8] 이스라엘 품목별 수입 동향(2018년-2019년)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수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76,598	76,491	-0.1
1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127	5,979	-2.4
2	보석	710239	기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3,370	2,642	-21.6
3	보석	710231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포개진 것)	3,159	2,047	-35.2
4	석유제품	271019	기타	1,784	1,790	0.3
5	농약 및 의약품	300490	기타	1,421	1,537	8.2
6	항공기 및 부품	880240	자체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319	1,489	12.9
7	자동차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 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703	1,287	83.0
8	자동차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47	1,198	4.4
9	무선통신기기	851712	셀룰러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1,143	1,135	-0.6
10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520	부유 또는 수중 드릴링 또는 생산 플랫폼	48	1,055	2112.2
11	자동차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62	1,023	-24.9
12	기타잡제품	999999	그밖의 분류되지 않은 상품	674	851	26.2

수입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3	염료및안료	854239	전자 집적 회로 (프로세서, 컨트롤러, 메모리 및 증폭기 제외)	929	781	-15.9
14	무선통신기기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밖의 자료의 수신용· 변환용·송신용·재생용기기 [교환기와라우팅(routing)기기를포함한다]	650	763	17.4
15	항공기 및 부품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42	623	339.4
16	석탄	270119	석탄 (무연탄, 유연탄제외)	751	617	-17.8
17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91	615	25.2
18	반도체제조용 장비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기계 와 기기	1,977	590	-70.2
19	컴퓨터	847150	처리장치(소호제8471.41호나제8471.49호 외의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 치중 한 가지나 두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 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1	565	0.7
20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289	509	76.2

주: 2019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ITC

이스라엘 '18년, '19년 전체수입은 각각 76,598 백만불, 76,491백만불이며,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보석, 석유제품, 농약 및 의약품, 항공기 및 부품 등으로 확인되었다.

'19년 기준 전년대비 수입이 가장 급증한 품목은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HS 8905.20/부유 또는

수중 드릴링 또는 생산 플랫폼), 항공기 및 부품(HS 8411.12/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자동차[HS 8703.40/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로 전년대비 각각 2,112.2%, 339.4%, 83%로 급증한 바 있다.

4. 이스라엘 통상·통관환경

1) 이스라엘 통관 개요

이스라엘의 통관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비싼 편이며, 통관은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스라엘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이스라엘 세관에서 수입품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특별확인증 등이다.



구분	내용
선하증권	-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함
포장명세서	-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함 -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돼 있음 - 팔레트나 컨테이너별 별도 패키징 리스트가 필요함
수입허가서	-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음
특별확인증	- 산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됨

자료: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이스라엘(2020)

3) 이스라엘 수입통관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10톤 이하 30일)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이 돼야 함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함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음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함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함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함
◆ 색깔을 달리해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함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돼야 함(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총 중량과 순 중량,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5. 맺음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수교를 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對아랍관계로 인해 긴밀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아 국가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또한, 현지 이스라엘의 언론에서도 한-이스라엘 FTA 타결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원-원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시장인 이스라엘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을 일으키는데 작은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구분	 한-이스라엘 FTA 협상일지 
2019.08.21	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 공동 선언
2018.03.13.-15	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 개최(예루살렘)
2017.05.22.-26	한·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서울)
2017.04.19.-30	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개최(예루살렘)
2017.03.20.-24	한·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개최(서울)
2016.12.11.-15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개최(예루살렘)
2016.06.27.-30	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16.05.24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합의(예루살렘)
2016.01.06	한·이스라엘 FTA 추진관련 대국민 공청회
2010.08	한·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종료
2010.04.15	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 제3차 회의(예루살렘)
2009.09.15	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 제2차 회의(화상회의)
2009.08.17	한·이스라엘 FTA 민간공동연구 제1차 회의(서울)
2009.05.18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 개최시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자료: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il/1/>)